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I. 제 출 자 : 이천시장

Ⅱ. 제출일자 : 2002. 12. 11.(2002. 12. 11 산업건설위원회 회부)

Ⅲ. 근거법령 : 수도법 제8조(수도사업의 경영원칙) 제2항

Ⅳ. 검토내용

1. 제안이유

○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아 상수도사업 경영 수지 적자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사업 현안문제(시설확충, 수질 개선, 경영의 합리화 추진)해결을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이천시수도급수조례의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평균 15% 인상함.(안 별표 2)

3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판매단가가 낮아 상수도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본 사업 현안 문제인시설확충, 수질개선, 경영의 합리화 추진 등 해결을 위해 상수도요금평균 15% 인상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